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등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49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가. 제정의 필요성	5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9
2. 주요 조문별 검토	10
가. 실태조사(안 제5조)	10
나. 공교육 진입 지원(안 제6조)	13
다. 한국어교육 지원(안 제7조~제9조)	17
라. 정보의 제공·활용(안 제10조)	25
마. 중점지원학교의 지원·지정 등(안 제11조)	27
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안 제14조)	3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4. 15.

3. 회 부 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5년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 등이 추진되면서 2024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 수가 우리나라 총인구의 5%인 258만명을 넘어섰고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돌파하며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주배경학생 중에서도 외국인가정의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이주배경학생의 초중등 학교 진입이 늘어날뿐만 아니라 공교육 진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어 의

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 누적이 심화되고 있고, 학생의 이주배경, 언어 능력 등에 따른 학습 격차가 큰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교 부적응이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확대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 및 등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이주배경학생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특별학급 설치·운영, 한국어교육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지원학교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의 필요성

- 이주배경학생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경험을 가진 학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¹⁾, 종전의 국제결혼가정 중심의 다문화학생 개념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용어임.

2026년 이주배경학생 수는 210,83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공교육 진입이 초등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전 학교급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적응 및 수업 참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밀집지역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등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²⁾.

< 연도별 이주배경학생 현황 >

(단위: 명)

연도	전체	내국인		외국인
		국내출생	중도입국	
2026년	210,838	138,736 (65.8%)	13,540 (6.4%)	58,562 (27.8%)
2025년	202,208	136,592 (67.6%)	12,740 (6.3%)	52,876 (26.1%)
(중 략)				
2012	46,954	40,040 (85.3%)	4,288 (9.1%)	2,626 (5.6%)

자료: 교육기본통계(매년 4.1. 기준)

1) 김희주·김혜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제25호, 인천연구원, 2024, pp. 69-110.

< 최근 3년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 >

(단위: 교)

구분		‘26	‘25	‘24
밀집학교 수		163	123	100
이주배경학생 밀집도	90% 이상	5	4	4
	70% 이상 90% 미만	18	17	14
	50% 이상 70% 미만	29	25	18
	30% 이상 50% 미만	111	77	64

자료: 4.1. 기준 교육기본통계, 전교생 100명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 30% 이상인 학교

- 이에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단계부터 학교 적응까지의 지원체계를 별도 법률로 정비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입학 안내 및 상담, 한국어능력진단검사, 입학 전·후 한국어교육, 중점지원학교 지정, 지역 협력체계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지원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주배경학생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교 진입 이전 단계부터 사후 적응 지원까지를 포괄하는 일관된 법적 근거와, 밀집학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및 안정적인 인력·재정 지원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수단을 체계화하고, 지역·학교별 편차가 큰 한국어교육 및 지원체계의 기본 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

2) 한국교육개발원,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가 있음.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연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한국어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현행 법상 지원체계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정안과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유사·중복 조문 >

구분	제정안	현행 「초·중등교육법」
실태조사	안 제5조	제28조의2제2항
특별학급 설치·운영 (한국어학급)	안 제8조제2항~제5항	제28조의2제4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14조	제28조의2제5항

또한 안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화될 경우 개별 사항별 적용관계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별도 제정을 추진한다면 「초·중등교육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 법률 간 기능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정안의 “이주배경학생”과 동일한 대상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 등”을 이주배경학생에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로 사용하고 있어³⁾, 양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대상 범위에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주배경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을 말한다.

제7조(한국어능력진단검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 등”이라 한다)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이하 “한국어능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주배경학생 등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으로, 16개의 본칙,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 본칙(16개 조문)	
제1조(목적)	제9조(입학 전 한국어교육 지원)
제2조(정의)	제10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1조(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연수)
제5조(실태조사)	제13조(지역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공교육 진입 지원)	제14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제7조(한국어능력진단검사)	제15조(업무의 지도·감독)
제8조(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부칙(2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실태조사(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주배경학생은 학교급·지역·유형(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등)에 따라 교육 격차, 한국어 능력, 진로·진학, 복지 지원 등에서 요구되는 지원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학습권 등 기본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일반 통계나 제한적인 표본조사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직면하는 교육·생활상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정책 사각지대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규

모, 특성, 교육·복지 수요,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정책과 예산 배분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도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으므로⁴⁾, 향후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두어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삭제하고 제정법률에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성별·국적·입국경위·출생지·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에 근거해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한 바,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필요
- 다만, 동 법 제정 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근거 삭제해 법적 중복성 배제 필요

나. 공교육 진입 지원(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공교육 진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취학 대상 이주배경학생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보호자가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입학 신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의 이주배경, 언어 수준 등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입학 안내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가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입학 신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이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그의 이주배경, 언어 수준 등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 부여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은 출입국·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 또는 일정한 서류의 제출을 거쳐 초·중등학교에 자유롭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음⁵⁾.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입학과 관련된 정보 부족, 까다로운 서류 요건과 절차,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장 재량에 따른 입학 거절 등으로 인해 이주배경학생은 입학·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⁶⁾.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28조⁷⁾에서 규정한 초등교육의 의무성과 중등교육의 접근 가능성 확대에 따를 때, 제정안과 같이 이주배경학생의 입학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학을 거부하는 등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6) 김희주·김혜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25호(2024.6.), 인천연구원, 2024, 쪽 88-93
-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서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만, 제정안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 선택이 제한되는 비이주배경학생과 비교할 때, 이주배경학생에게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3항8)에서 이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한국의 교육제도를 잘 모르는 외국인가정의 보호자가 자녀를 제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입학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거나 외국인등록(주거지 변경 포함) 시 이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정보를 활용해 학교 입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아울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책무가 있는 바,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입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에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

○ 서울시교육청: 일부수정

- 공교육 진입을 ‘입학’으로 규정하였으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수정

8)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교육청: 일부수정**

- 제2항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 입학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담, 정보 제공, 입학 신청 지원은 현재도 운영 중인 지원 절차임.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중복,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3항과 관련, 이주배경 및 언어 수준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에는 공감함. 다만, 고등학교의 편입학은 초·중학교와 달리 학교 유형, 교육과정, 정원, 학년 배정, 교과 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이러한 특수성이 자칫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으로 인해 무시될 수 있음. 따라서 차별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입학 또는 편입학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관계 법령 및 학칙에 따르도록 일반 규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어교육 지원(안 제7조~제9조)

제 정 안

제7조(한국어능력진단검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 등”이라 한다)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이하 “한국어능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주배경학생 등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및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배경학생 등에게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한국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한국어능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한국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위탁기관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능력, 학교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의 설치·운영 및 한국어교육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학 전 한국어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 등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결과를 학년 배정 및 학습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안 제7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 이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특별학급·원격교육 등의 방식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며(안 제8조), 입학 이전에도 위탁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1) 안 제8조 관련

□ 안 제8조는 입학 이후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전반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부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제정안 제8조 조문 구성 >

구분	법적 근거 마련	운영 범위 확대
한국어 교육과정	제1항	-
한국어 학급	제2항~제4항	제5항
한국어 예비과정	제2항~제3항	-
모두의 한국어	제6항	제7항

※ 제8항은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

□ 먼저, 동 조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한국어교육 제도를 법률상 근거로 명시하고 있음.

‘한국어 교육과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본적인 지원 체계임(안 제1항).

<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원리 >

구성 범주	초급	중급	고급
주제와 장면	친숙한 일상/학교생활 화제 예측이 가능한 일상/학교생활 장면	친숙하지 않은 일상/학교생활 화제 및 장면	낮선 화제 교과 학습 장면
어휘	기초, 기본어휘 쉬운 학교생활 어휘 쉬운 교실 어휘	기본어휘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확장, 심화 어휘 교과 핵심 어휘
언어조정능력	낮은 상위인지능력	중간 상위인지능력	높은 상위인지능력

자료: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은 교내에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의 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통합교과(음악, 미술, 체육 등)는 원적학급에서, 원적학급 외 교과 시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임(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2025년 특별학급(한국어학급) 담당 교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임	26	23	27	21	16	16	7	2	98	0	28	43	9	7	30	40	4	397
겸임	7	1	0	79	1	1	2	0	12	10	5	1	0	6	34	0	1	160
총계	33	24	27	100	17	17	9	2	110	10	33	44	9	13	64	40	5	557

자료: 교육부

‘한국어 예비과정’은 원적학급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통상 3개월에서 1년 범위)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위탁형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됨(안 제2항 및 제3항).

< 2024~2025년 한국어 예비과정 개설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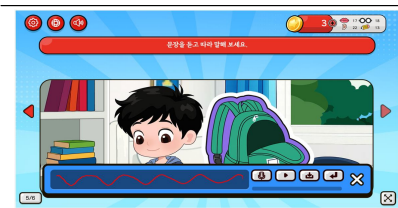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24년		5		1	1				12		5			3	1	1		29
2025년	3	4	1	2	1			1	46	3	5	2		3	1	3	1	76

자료: 교육부

‘모두의 한국어’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단과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로서, 개별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안 제6항).

< 모두의 한국어 학습 예시 >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말하기 학습 기능	AI 필기 인식 기술을 활용한 쓰기 학습 기능	학습자의 학습데이터 및 성취도 분석 관리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교육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간 행정지침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산 지원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 한편, 동 조문은 기존 제도의 운영방식을 일부 조정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도 있음.

특별학급 운영 시 학생의 한국어능력과 학교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안 제5항)은 일반 교육과정 참여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 제7항)은 맞춤형 학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다만, 제4항은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초·중등 교원자격증 체계에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원 자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학교 현장에서도 주로 일반 교과 교원이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을 겸임·전담하거나 한국어강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개념과 범위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한국어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담당 교원의 범위와 배치·운영 방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학교가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육학습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필요 - 또한,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학생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학급 설치, 한국어교육 위탁 등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원 배치, 경비 및 인력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하고, 특별학급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특별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한 교실 내에서 수학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맞춤형 학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서울시교육청: 일부수정 - 제1항과 관련, '보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제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예산 확보 및 현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임의조항인 '보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충북교육청: 일부수정 - 제2항과 관련, 한국어학급 외에 집중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국어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제주교육청: 일부수정 - 제6항과 관련, 원격교육은 한국어교육 지원 방식 중 하나로, 제1항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제2항의 한국어교육 지원 범위에서 운영 가능함. 이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경우 교육감에게 지능정보기술 기반 원격교육 체계 구축·운영 책임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도교육청의 행정·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6항은 신중검토가 필요 - 제7항과 관련, 원격교육 참여 조치는 학교 현장의 학생 관리, 보호자 동의, 기기·접속 환경 지원, 수업 중 관리 책임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검토가 필요

(2) 안 제9조 관련

□ 안 제9조는 이주배경학생 등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학 이후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임.

□ 현행 제도는 입학 이후에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한국어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초기 학교 적응 지연, 학습 결손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학 전 단계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안 제1항 및 제2항)은 다양한 운영 주체를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해당 교육 결과를 입학 이후 학년 배정 및 학습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 제3항)은 입학 전·후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입학 전 한국어교육은 의무교육 체계 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여 대상의 범위, 참여 유도 방식, 교육의 질 관리 및 지역 간 편차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위탁기관 운영 시 교육 내용과 수준에 대한 관리
·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이주배경학생이 연령, 이전 국가에서의 수학능력 등에 따라 적기에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제 차이, 입국 시기 등에 따라 학교에 바로 입학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받으면서 학교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라. 정보의 제공·활용(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및 그 보호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 한국어교육 지원의 내용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하여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주배경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안 제1항 및 제2항), 교육감·학교의 장·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이 상호간에 이주배경학생의 주거지, 연락처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안 제3항),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항).

-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체류자격, 가족관계, 거주지 등 기초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초기 적응 단계에서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및 학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청, 학교, 위탁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생별 지원 이력 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및 분석자료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중장기적인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의 정교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국인등록 정보 등과 같은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활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실시한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 및 한국어교육 지원 등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

마. 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 등(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하 “중점지원학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점지원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및 조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점지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점지원학교의 지정 기준, 운영 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지역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하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중점지원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지원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항).

□ 현재 지역별·학교별로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경우 학생 간 한국어능력 격차 및 다양한 배경언어로 인해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 이면서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밀집학교’로 분류

하여 별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교육과정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점에서 중점지원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2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⁹⁾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집학교의 경우, 학생 간 한국어 능력 격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일반적 자율성만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지나치게 폭넓게 허용할 경우 교

9)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발췌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육의 질 관리 및 국가 교육과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 범위는 일정한 기준 하에서 제한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¹¹⁾, 이와 유사하게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과정 조정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이주배경학생 재학 비율이 높거나,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다수인 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 생활지도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크며,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은 결국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비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음
- 따라서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등을 고려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집중지원 학교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일부수정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이주배경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언어, 사회, 역사, 문화 등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음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가 이주 배경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별도 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오해 및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는 삭제가 필요함

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 지원 및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과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이미 이주배경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¹²⁾, 제정안은 기존 법령과 동일·유사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체계상 정합성을 고

12)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려하여 제정안 제14조를 삭제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율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 및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능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해당 규정을 둘 경우에는 센터의 주요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교육청 등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다만, 동 법 제정 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삭제해 법적 중복성 배제 필요
○ 행정안전부: 일부수정 - 본 조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5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그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바, 「초·중등교육법」 개정 또는 해당 제정법안 수정을 통해 법적 중복성을 배제하고 법 체계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